

정 관



광 투 회

광복회 정관

1965. 4. 1. 제정
1973. 4.16. 개정
1979. 6. 8. 개정
1980. 9. 5. 개정
1985.12.10. 개정
1989. 5.30. 개정
1990. 6. 5. 개정
1997. 5.22. 개정
2000. 6.14. 개정
2001.12.14. 개정
2006.12. 7. 개정
2007. 7. 6. 개정
2010. 2. 3. 개정
2010. 5.28. 개정
2017. 9.19. 개정
2019.10.15. 개정
2020. 9.22. 개정
2022. 6.27. 개정
2023. 3. 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광복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순국선열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 정기를 선양하고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며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국

민정신으로 승화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9.19. 개정>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민족통일, 민족정기 선양 및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
2.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계승·승화를 위한 사업
3. 독립운동 사적 발굴·보전
4. 독립운동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회관 임대사업
6. 회원의 권익신장,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2017.9.19. 개정>
7.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수익사업) ①정관 제3조에 따른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회원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본회는 일체의 수익사업을 엄격하게 관장하고 감독하며 인사권, 감사권, 징계권을 행사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2019.10.15. 신설>

제5조(유사명칭 사용금지) 회원은 광복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를 설립할 수 없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 ①본회의 회원은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2019.10.15. 개정>

②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회 저명인사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명예회원 및 자문위원으로 영입할 수 있다

제7조(준회원) ①본회의 준회원은 직계비속인 선순위자 유족을 원칙으로 하되, 본회 재정 및 행정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②1단계는 회원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하되, 회원이 없을 때는 직계비속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8조(권리 · 의무) ①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준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본회의 회원 및 준회원은 각급회의 총회 및 이사회 등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지켜야하며, 또한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③본회의 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9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본회는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 반대하는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 3 장 총회 및 이사회

제 1 절 총 회

제10조(본부의 기구) 본회의 본부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1조(총회의 구성) 본회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연 1회, 5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총회재적 구성원 3분의1 이상,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단체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대의원) ①본회의 대의원은 각 시·도지부별 회원수 1인 내지 50인당 1인으로 하고, 회원수가 5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에는 대의원 1인을 두며, 대의원은 각 시·도지부 지부총회에서 회원이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각 시·도지부별 회원수는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2023.3.3. 개정>

②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2022.6.27. 개정>

③대의원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매년 4월 세번째 수요일에 각 시·도지부총회에서 회원이 직접 선출하며, 보궐선거로 선출한 대의원의 임기는 기존 대의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2023.3.3. 신설>

제 2 절 이사회

제15조(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1 이상 또는 감사의 소집요구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
2. 사무총장의 임명승인
3. 예산 및 결산심의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사업계획의 심의
6. 지부 및 지회설치에 관한 사항
7. 포상 및 징계에 따른 상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9.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임원 및 사무국

제17조(임원 및 고문) ①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1인
- 2. 부회장 2인
- 3. 이 사 10인 이내
- 4. 감 사 2인

②본회에 사무총장 1인을 둔다.

③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원로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추대하며,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이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명할 수 있다.

③회장은 업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회장 중에서 상근부회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감사는 본회와 지부 및 지회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체의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 ①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삭제<2019.10.15. 개정, 2022.6.27. 개정>

③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면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임원 중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내에 보충하여야 한다.<2022.6.27. 개정>

제20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 부회장, 이사 4년
- 2. 감사 3년

②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다만 재임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2022.6.27. 개정>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임원 및 선출직의 자격요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 및 지부장, 지회장,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품위손상 또는 범법행위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제22조(임원의 해임) ①총회는 총회재적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본회 총회구성원 2분의1 이상의 발의를 얻어 임원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고,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본회는 1개월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총회재적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③전항의 해임 의결된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제23조(임원의 사임) 임원의 사임은 회장단에서 처리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임원의 겸업금지) 본회의 상근임원 및 직원은 회장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와 관련되는 영리목적의 사업을 할 수 없다.

제25조(사무국) ①본회는 이사회 의결로서 사무총장 밑에 국, 부, 팀을 신설 및 폐지할 수 있다.

②각 국,부,팀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면하되, 각 국, 부, 팀장의 업무분장은 회무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지부와 지회

제26조(지부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②지부의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지부에는 지부장 1인과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제27조(지부총회) ①지부총회는 당해 지부장 및 관할 지회장을 포함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부총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지부장 선임과 권한) ①서울특별시지부장 및 각 시도지부장은 회장이 임면한다.

②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임면한다.

③지부장은 지부총회 의장이 된다.

④지부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⑤지부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면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제29조(지회와 기구) ①시·군·구에 본회의 지회를 둘 수 있다.

②지회의 설치기준은 회원 20명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019.10.15. 개정>

③회원 20명 미만인 시·군·구의 경우 인접 시·군·구와 연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2019.10.15. 개정>

④지회는 지회장 1인과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⑤지회총회는 당해 지회장 및 관할 회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지회총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의2(해외지회) ①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국외의 광복회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민족정기 선양과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해외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2019.10.15. 신설>

②제1항에 따른 해외지회 기구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2019.10.15. 신설>

제30조(지회장 선임과 권한) ①지회장은 지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면한다.

②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③지회장은 사무장의 임면권을 가진다.

④지회장은 지회총회의 의장이 된다.

⑤지회장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⑥지회장 후보 자격기준 등은 정관 제21조(임원 및 선출직의 자격요건)를 준

용한다.

제 6 장 재 정

제31조(재정 및 회계) ①본회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회관임대료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③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④재정 운영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세부업무규정)을 만들어 운영한다.

⑤기부금에 대하여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2017.9.19. 개정>

제 7 장 보 칙

제32조(정관개정) ①정관은 법률로써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총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②정관개정의 발의는 이사회 또는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정관개정의 발의가 있을 때 회장은 총회가 소집되기 10일전에 개정이유서를 첨부하여 총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 ①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원 또는 본회에 기여한 공적이 큰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별도 심의기구(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징계) ①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사유가 있는 회원은 별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

2. 본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본회 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회원에게 그 사유를 미리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징계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자격정지(직위 및 선거권, 피선거권 정지)
3. 제명

제35조(해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해산결의
2.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위배하여 그 운영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

제35조의2(잔여재산) 본회를 해산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2020.9.22. 신설>

제3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본회의 각급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시·군·구 지회장 및 대의원을 선출하는 각급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회원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선거관리) ①본회는 각종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다만, 회장의 선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2023.3.3. 개정>

②본 위원회의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선거투표 방법) 본회의 각급단위 선거에 관한 투표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9조(선거규정) 본회의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입회 및 탈퇴) 본회의 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에 등록함으로써 회원 및 준회원이 될 수 있고, 탈퇴는 자유이나 재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1조(부설 연구기관) ①본회에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 연구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위하여 부설 연구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 연구기관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준용) 본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와 관례에 따른다.

부 칙(73.4.16)

①(정관의 제정 및 시행일) 본 정관은 「원호대상자 단체설립법」 부칙 제4조(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재승인을 받은 임원회의에서 제정하며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당시 최초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단
2. 재승인을 받은 이사
3. 회장이 지명하여 원호처장이 승인하는 전형위원 6명

부 칙(79.6.8)

①(정관개정 및 시행일) 본 개정안은 1979년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후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9년 정기총회시의 임원 및 대의원은 1회 임기가 끝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80.9.5)

①(시행일) 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개정당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980년 9월 3일 개최된 임시총회의 폐회와 동시에 종료된다.

③(경과조치) 본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85.12.10)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5년 4월 2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총회구성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임원 및 대의원은 1990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 칙(89.5.30)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89년 5월 27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총회구성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 ③(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임원 및 대의원은 1990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부 칙(90.6.5)

- ①(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5월 15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989년 5월 30일 개정된 정관 부칙 제3항에 의하여 1990년 5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현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부 칙(97.5.22)

-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 및 대의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정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5월 31일까지로,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0.6.14)

-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 및 대의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신구정관 제10조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5월 31일까지로 대의원의 임기는 신, 정관 제18조제4항과 구, 정관 제18조제6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1.12.14)

-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임원 및 대의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장, 부회장,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5월 31일 까지로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 제1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02년 4월 30일 까지로 한다.

부 칙(2006.12.7)

-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각 시도지부장(초대 서울특별시지부장 포함)의 임기는 정관 제20조(임원의 임기)와 제27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2. 초대 서울특별시지부 관할 지회장은 정관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이를 승인한다.

부 칙(2007.7.6)

-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1.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각 시도지부장(초대 서울시지부장 포함)의 임기는 정관 제20조(임원의 임기)와 제28조제5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대의원의 임기는 정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2. 서울특별시지부 관할 지회장은 초대 지부장이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 제30조(지회장 선임과 권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선임장을 수여한다.

부 칙(2010.2.3)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선출된 임원(감사포함), 대의원, 지회장의 임기는 개정전 구 정관에 따른다.

부 칙(2010.5.28)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된 지회장은 정관 제30조(지회장 선임과 권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 선출된 지회장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부 칙(2017.9.19)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의거 광복회 총회의 권한대행을 위임받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5)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9.22)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6.27)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 및 대의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신구 정관 제2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또한, 대의원의 임기는 신구 정관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23.3.3)

①(시행일) 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